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2과-2628
등록일자	2016.1.22.
결재일자	2016.1.22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지방소득세3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	
도현수	김태영	김광수	전결 01/22 김용운		
협조자					

- 지방소득세 3팀 주요업무 -

## 2016년 지방소득세(특징) 세입목표 달성 계획

■ 2016년 징수목표  
- 금액 : 3,373억 원 (전년대비 31% 증가)

■ 2015년 징수 현황

2015년			2014년	증감(A/B)	
목표액	징수액 (A)	진도율	징수액 (B)	금액	증감율
257,025	371,878	145%	298,831	73,047	24% 증가

※ 전년대비 징수액 730억, 24% ↑, 서울시 전체 목표액의 16%

■ 중점추진사항

- 국세청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누락세원 추징
- 신속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 철저
- 현년도 특별징수분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관리 철저

2016. 1. 21.

강 남 구  
(세 무 2 과)

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세법 제85조【정의】 ~ 제103조의 61【가산세 적용의 특례】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6년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세입목표 달성 계획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강남구 재정확충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 ] [신규 : 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75%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( 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>-----</td> <td>( )</td> </tr> </table> <p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 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)	⑤ 시장조사	-----	( 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2016년 지방소득세(특징) 세입목표 달성 계획

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의 체계적 세원관리 및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세원누락 예방과 적기과세를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### I 추진 개요

- 납세의무자 :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
- 납부방법 : 소득세의 10% 다음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
- 납세지 :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

#### 2016년 징수목표

- 금액 : 3,373억 원(전년대비 31% 증가)

※ 추후 목표배시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

#### 2015년 징수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2015년			2014년	증감(A/B)	
목표액	징수액 (A)	진도율	징수액 (B)	금액	증감율
257,025	371,878	145%	298,831	73,047	24% 증가

- 전년 대비 징수액 730억원, 24% 증가
- 서울시 전체 목표액에 16%, 서울시 점유율 약 21% 임
- 2015년 세입 증가 특수요인
  - 한국\*\*\* 1건 235억 국세청 추징 및 법령 개정 등

## II

### 중점 추진사항

- 국세청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누락세원 추징
  - 국세청자료와 과세대상 자료 전수조사
  - 필요시 현장 확인 등 병행
- 신속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 철저
  -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자료 철저 대사
- 현년도 특별징수분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관리 철저
  - 체납처분 확행 징수율 제고

## III

### 세부 추진계획

- 국세청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누락세원 추징
  - 추진기간 : 2016. 1월~12월
  - 국세청자료와 과세대상 자료 1:1 매칭을 통한 전수조사
    - 특별징수분 원천징수 누락 및 과소납부자 대사
  - 필요시 현장확인 등 병행으로 미납부자·과소 납부자 철저 추징
    - 2015년 국세청 과세자료 대사 및 추징 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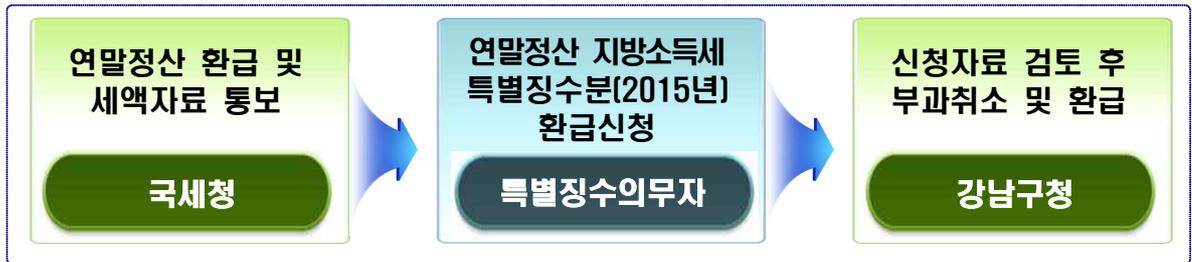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원)

국세청 과세자료	1인기준 年 처리건수	2015년 추징내역		1인기준 年 추징내역	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
350,460	14,602	44,124	8,712	1,838	363

- 1인 기준 월 평균 1,200건 대사, 153건 추징
- 매월 특별징수 수기분 수납자료 전산입력으로 신속·정확한 부과자료 구축 (월 약 14,000건 / 120억 원 전산입력)

□ 신속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 철저

- 추진기간 : 2016. 3월~5월 집중 환급신청
- 환급취지 : 1년 단위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 과다납부한 부분에 대한 부과취소 후 적정 환급
- 추진방법



- 2015년 환급규모 : 5,900건 13억 원(지급율 100%)

□ 현년도 체납처분 및 납부독려 철저

- 효율적인 체납처분 실시
  - 부과 및 독촉 관련자료 철저 (삼십만원 이상 등기발송)
  -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
  - 차량·부동산 등기 압류 등 체납처분 확행
- 특별징수분 체납처분의 엄격한 법적용
  -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세 납세의무 준수 철저
  - 원천징수한 지방세 미신고납부자 형사고발 등 (지방세기본법 제131조 2011.1.1.시행)
  - 사업주들의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

IV

**행정사항**

- 분기별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미처리자료 정리 추진
- 신속 적정한 연말정산 환부처리로 민원 예방
- 2016년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실태 감사 대비 업무 철저 (감사담당관-631호, 2016.1.14.)

\*\*\*\*\*

\*\*\*\*\*

지방세법 제89조(납세지 등)

③ 「제103조의13, 제103조의29,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.」

1.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: 납세의무자의 근무지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**1.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특례 신설 [지법 § 103조의62]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법인 이자·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세지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다름 - 납세지가 같은 경우에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- 특별징수 납세지 지자체별 환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특별징수 납세지와 신고지가 다른 경우 신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로 봄 - 납세지가 다른 경우에도 기납부세액 차감 -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- 특별징수지와 신고지 지자체간 정산 절차 협약 근거 마련

〈개정이유〉 납세편의 제공

**※ 내국법인 특별징수 정산특례 신설 관련 과세체계 개편**

- ①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내국법인 특별징수 조항 신설(2015.1.1.시행)
- ②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내국법인 특별징수 정산 특례 신설(2016.1.1.시행)

**2.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하향 조정 [지기법 § 53조의5]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미납(과소납)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- 미납(과소납) 세액 × 5% + 지연일자 × 1만분의3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납(과소납)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- 미납(과소납) 세액 × 3% + 지연일자 × 1만분의3

〈개정이유〉 납세 협력 비용 경감

**3. 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 완화 [지기법 § 54]**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 -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 -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 -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익을 향상하고 성실신고 유도